논산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02호 2018.10.10(수)

고 시

• 제2018-177호 :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제2018-178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3
• 제2018-179호 : 논산시 도시계획시설(강경 2호 북옥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6
• 제2018-180호 : 공유수면 점용허가 변경에 따른 고시 ····· 12

공 고

• 제2018-1469호 : 논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8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13
• 제2018-1471호 : 도로점용허가(굴착) 내용 공고 ····· 15
• 제2018-1474호 : 2018년 논산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 16
• 제2018-1492호 :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18

공 고 (입법예고)

• 제2018-1489호 :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공공시설사업소공고제2018-7호 :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회람							

• 발 행 : 논산시 • 편 집 : 열린홍보실 ☎ 746-5141

논산시고시제2018-17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452-1번지 일원 지역주민의 휴양·운동 및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재생과(☎ 041-746-62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10. 10.

논 산 시 장

1.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공간시설(문화공원)

(1)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1호 문화공원	문화공원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451-1번지일원	10,450	-	10,450	2017. 3.20.	

나) 공원조성계획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m^2)	구성비 (%)	공작물 (기)	건축면적(m^2)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10,450.0	100.0	43	13.5	13.5	시설율: 65.2%
시 설 총 계			6,812.1	65.2		-	-	
도로 또는 광장	소 계		771.8	7.4		-	-	
		도로	771.8			-	-	
조경시설	소 계		3,214.9	30.8	9	-	-	
	2	잔디광장	3,214.9			-	-	
	A	정자	-		2	-	-	
	B	원두막파라솔	-		5	-	-	
	C	아치게이트	-		2			

시설 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m^2)	구성비 (%)	공작물 (기)	건축면적(m^2)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112.9	1.1		-	-	
	3-1	휴게쉼터A	59.6			-	-	
	3-2	휴게쉼터B	53.3			-	-	
운동 시설	소 계		715.2	6.8	8			
	5-1	멀티코트	661.7			-	-	
	5-2	체력단련A	25.5			-	-	
	5-3	체력단련B	28.0			-	-	
	D	체력단련시설	-		8	-	-	4종
교양 시설	소 계		475.8	4.5	7			
	6-1	마을문화광장	74.8			-	-	
	6-2	마을역사광장	112.2			-	-	
	6-3	행사광장	288.8			-	-	
	E	문화안내판			7			
편익 시설	소 계		1,521.5	14.6	2	-	-	
	7-1	주차장	1,455.3			-	-	
	7-2	화장실	60.8		1	13.5	13.5	
	7-3	음수대	5.4		1	-	-	
관리 시설	소 계		-		17	-	-	
	F	보안등	-		17	-	-	
녹지 및 기타	소 계		3,637.9	34.8		-	-	
		녹 지	3,637.9			-	-	

2.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논산시고시제2018-178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논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224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2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민원토지과(☎041-746-5644, 564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0.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078-7	충청남도 논산시 번영로17번길 14-6 (취암동)	20090909	번영로의 시작점에서 약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768-2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224	20120416	마전리에서 봉동리를 잇는 도로로서 마봉로로 명명
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66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황1길 79	20091019	훈련소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삼산리 277-5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238번길 64	20090909	성동로의 시작점에서 약2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398-2, 398-3, 400-7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월성길 38-29	20090909	행정구역명칭(월성리)을 이용하여 월성길로 명명
6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29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14	20081201	조선후기의 무신인 백일헌 이삼장군의고택(충청남도 민속자료 7호)을 경유하는도로로서 역사적 인물 적용
7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98-3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적로 421	20081201	논산시 부적면을 대표하는도로로서 행정구역명칭 활용
8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682-2, 682-3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아호1길 90-13	20081201	계백로의 시점에서 아호리를 지나는 첫번째 분기 도로
9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491-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755번길 25-9	20081201	선비로의 시작점에서 약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325-7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75-3	20090710	계백장군이 신라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황산벌을 경유하는 도로
1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함적리 422-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함적길 127	20081201	행정구역명칭(함적리)을 이용하여 함적길로 명명
12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7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470번길 28-13	20081201	덕은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4,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491, 491-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755번길 25-9	20180928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768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224	20180928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3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398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월성길 38-29	2018100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논산시고시2018-179호

논산시 도시계획시설(강경 2호 북옥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12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인 『강경 2호 북옥근린공원』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과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재생과(041-746-62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논 산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명칭 : 강경 2호 북옥근린공원(강경산 문화공간 주차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129-3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면적 : 3,973㎡(공원 전체면적 : 52,744㎡)
- 주요내용 : 도로 및 광장, 주차장, 녹지

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19. 3.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바. 공원 조성현황 조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별첨1

아. 실시계획인가 따른 이행조건 : 붙임 1

[별첨1]

– 강경 북옥근린공원 조성현황 –

가. 공원 조성현황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전체면적(㎡)	면적(㎡)				비고
				완료시설	기추진중	금회시행	추후시행	
총 계			**52,744.0**	**47,752.0**	**1,463.0**	**1,672.0**	**1,857.0**	
시 설 계			**16,762.0**	**11,770.0**	**1463.0**	**1,672.0**	**1,857.0**	
도로 및 광장	**소 계**		**7,125.0**	**5,707.0**	**112.0**	**1,282.0**	**24.0**	
	도 로		5,998.0	5,451.0	-	547.0	-	-
	광 장		1,127	256.0	112.0	735.0	24.0	-
	1-1	중앙광장	187.0	-	32.0	155.0	-	금회시행, 기추진
	1-2	진입광장	413.0	-	-	413.0	-	금회시행
	1-3	광장-1	167.0	-	-	167.0	-	금회시행
	1-4	휴게광장-1	80.0	-	80.0	-	-	기추진(2018-65호)
	1-5	휴게광장-2	24.0	-	-	-	-	추후시행
	1-6	휴게광장-3	256.0	256.0	-	-	-	완료시설
휴양시설	**소 계**		**78.0**	**-**	**-**	**-**	**78.0**	
	2-1	전망쉼터	78.0	-	-	-	78.0	추후시행
운동시설	**소 계**		**1,566.0**	**-**	**-**	**-**	**1,566.0**	
	3-1	다목적구장	706.0	-	-	-	706.0	추후시행
	3-2	배드민턴장	654.0	-	-	-	654.0	추후시행
	3-3	게이트볼장	206.0	-	-	-	206.0	추후시행
교양시설	**소 계**		**4,962.0**	**3,422.0**	**1,351.0**	**-**	**189.0**	
	4-1	문화관	1,309.0	-	1,214.0	-	95.0	기추진(2018-65호)
	4-2	체험공방	231.0	-	137.0	-	94.0	기추진(2018-65호)
	4-3	침례교선교지	224.0	224.0	-	-	-	완료시설
	4-4	강경문화마당	2,299.0	2,299.0	-	-	-	완료시설
	4-5	야외무대	-	-	-	-	-	완료시설
	4-6	벽천	-	-	-	-	-	완료시설
	4-7	기념비	34.0	34.0	-	-	-	완료시설
	4-8	봉수대	418.0	418.0	-	-	-	완료시설
	4-9	소금집	447.0	447.0	-	-	-	완료시설
	4-10	산림집	-	-	-	-	-	완료시설
	4-11	관람데크	-	-	-	-	-	
편익시설	**소 계**		**3,031.0**	**2,641.0**	**-**	**390.0**	**-**	
	5-1	진입마당	203.0	203.0	-	-	-	완료시설
	5-2	전망대-1	113.0	113.0	-	-	-	완료시설
	5-3	전망대-2	113.0	113.0	-	-	-	완료시설
	5-4	주차장-1	1,225.0	835.0	-	390.0	-	금회(변경)시행
	5-5	주차장-2	545.0	545.0	-	-	-	완료시설
	5-6	주차장-3	438.0	438.0	-	-	-	완료시설
	5-7	화장실	67.0	67.0	-	-	-	완료시설
	5-8	옥녀봉카페	327.0	327.0	-	-	-	-
관리시설	**소 계**		-	-	-	-	-	
	6-1	계단	-	-	-	-	-	추후시행
녹지 및 기타	**소 계**		**35,982.0**	**35,982.0**	**-**	**-**	**-**	
	녹 지		35,982.0	35,982.0	-	-	-	**녹지율68.2%**

나. 공원 도로 조성현황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합계(㎡)	면적(㎡)		비고
						완료시설	금회시행	
합계				1,623.0	5,998.0	5,451.0	547.0	
소로	3류	1	3.6	84.0	298.0	298.0	-	진입로
소로	3류	2	6.0	42.0	251.0	-	251.0	연결로
소로	3류	3	1.4	23.0	32.0	-	32.0	연결로
소로	3류	4	1.3	30.0	39.0	-	39.0	연결로
소로	3류	5	2.1	31.0	65.0	-	65.0	연결로
소로	3류	6	1.3	19.0	24.0	-	24.0	연결로
소로	3류	7	1.3	7.0	10.0	-	10.0	연결로
소로	3류	8	4.3	109.0	472.0	472.0	-	연결로
소로	3류	9	4.0	32.0	126.0	-	126.0	연결로
소로	3류	10	2.0	134.0	269.1	269.0	-	산책로
소로	3류	11	2.1	57.0	118.0	118.0	-	연결로
소로	3류	12	2.0	56.0	112.0	112.0	-	산책로
소로	3류	13	3.0	13.0	39.0	39.0	-	연결로
소로	3류	14	5.2	41.0	214.0	214.0	-	연결로
소로	3류	15	4.7	83.0	393.0	393.0	-	진입로
소로	3류	16	2.0	67.0	132.0	132.0	-	산책로
소로	3류	17	2.0	29.0	57.0	57.0	-	산책로
소로	3류	18	5.3	237.0	1,257.0	1,257.0	-	연결로
소로	3류	19	4.0	104.0	421.0	421.0	-	연결로
소로	3류	20	1.9	56.0	105.0	105.0	-	산책로
소로	3류	21	2.0	14.0	29.0	29.0	-	연결로
소로	3류	22	2.0	3.0	6.0	6.0	-	연결로
소로	3류	23	2.0	66.0	132.0	132.0	-	산책로
소로	3류	24	2.0	57.0	115.0	115.0	-	산책로
소로	3류	25	2.0	8.0	16.0	16.0	-	연결로
소로	3류	26	3.8	35.0	131.0	131.0	-	진입로
소로	3류	27	6.3	106.0	668.0	668.0	-	연결로
소로	3류	28	7.5	41.0	307.0	307.0	-	진입로
소로	3류	29	4.1	39.4	160.0	160.0	-	진입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	읍	리	지번						성명	구분	
1	논산	강경	서창	126	–	1	대	284.0	284.0	기획재정부	국유지	
2	논산	강경	서창	126	–	2	대	46.0	46.0	국세청	국유지	
3	논산	강경	서창	126	–	3	대	33.0	33.0	기획재정부	국유지	
4	논산	강경	서창	126	–	4	구	13.0	13.0	기획재정부	국유지	
5	논산	강경	서창	126	–	5	구	17.0	17.0	논산시	시유지	
6	논산	강경	서창	126	–	6	구	116.0	116.0	논산시	시유지	
7	논산	강경	서창	126	–	7	대	7.0	7.0	기획재정부	국유지	
8	논산	강경	서창	127	–	1	구	50.0	14.7	논산시	시유지	
9	논산	강경	서창	127	–	2	대	122.0	77.6	국토교통부	국유지	
10	논산	강경	서창	127	–	3	대	159.0	15.5	논산시	시유지	
11	논산	강경	서창	128	–	1	대	20.0	20.0	기획재정부	국유지	
12	논산	강경	서창	128	–	2	구	73.0	73.0	논산시	시유지	
13	논산	강경	서창	128	–	3	대	66.0	66.0	논산시	시유지	
14	논산	강경	서창	129	–	3	대	754.0	754.0	논산시	시유지	
15	논산	강경	서창	130	–	3	대	149.0	149.0	국토교통부	국유지	
16	논산	강경	서창	130	–	4	대	149.0	134.1	국토교통부	국유지	
17	논산	강경	서창	131	–	1	대	13.0	13.0	기획재정부	국유지	
18	논산	강경	서창	131	–	2	대	36.0	36.0	기획재정부	국유지	
19	논산	강경	서창	131	–	3	대	33.0	33.0	기획재정부	국유지	
20	논산	강경	서창	131	–	4	대	7.0	7.0	기획재정부	국유지	

21	논산	강경	서창	132	-	1	구	7.0	7.0	국토교통부	국유지	
22	논산	강경	서창	132	-	2	대	83.0	83.0	기획재정부	국유지	
23	논산	강경	서창	133			대	20.0	20.0	기획재정부	국유지	
24	논산	강경	서창	134	-	1	구	20.0	20.0	논산시	시유지	
25	논산	강경	서창	134	-	2	대	129.0	129.0	국토교통부	국유지	
26	논산	강경	서창	135	-	1	대	10.0	10.0	국토교통부	국유지	
27	논산	강경	서창	135	-	2	대	56.0	56.0	기획재정부	국유지	
28	논산	강경	서창	135	-	3	대	79.0	79.0	국토교통부	국유지	
29	논산	강경	서창	136	-	1	대	79.0	79.0	국토교통부	국유지	
30	논산	강경	서창	136	-	2	대	99.0	99.0	국토교통부	국유지	
31	논산	강경	서창	137	-	1	대	10.0	10.0	국토교통부	국유지	
32	논산	강경	서창	137	-	2	대	63.0	63.0	국토교통부	국유지	
33	논산	강경	서창	138			대	30.0	30.0	국토교통부	국유지	
34	논산	강경	서창	148	-	3	도	1,170.0	646.6	국토교통부	국유지	
35	논산	강경	서창	149			천	10,344.0	732.5	건설부	국유지	

[붙임 1]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이행조건』

「도시계획시설사업(강경 2호 북옥근린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사업완료 후 공사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거나 등기부상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공사가 가능하고 공사완료 전까지 부지 내 토지를 시행자가 등기 이전하여야 함.
2. 사업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및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사업 시행중 인가사항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변경인가(협의)를 받고 사업 시행하여야 함.
5. 준공 2개월 전에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부서 입회하에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6. 공사완료시 준공도서(준공도면, 공사 전·후 사진, 하자증권, 품질관리성적서, 인계인수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이 있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각종 인·허가 관련 납부금은 착공 전에 납부하여야 함.
10. 당해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가 취소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
11. 기타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12.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의견을 이행하여야 함.

논산시고시제2018-18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한 고시

허가년월일	2018년 10월 5일	
점용장소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848번지 외 1필지	
점용목적	진출입로(공작물 설치)	
점용면적	200㎡	
점용기간	2018. 10. 10. ~ 2020.12. 31.	
점 용 자	성 명	농업회사법인(주) 백제바이오
	주 소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헌로1175번길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 10. 10.

논 산 시 장 

논산시공고제2018-1469호

논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8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논산시 내동 379-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8호)「시민로 완충녹지 8호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논산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지 8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논 산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논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8호)
- 명 칭 : 시민로 완충녹지 8호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 : 논산시 내동 379-17번지 일원

다. 면적 또는 규모
- 면적(A)=28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바. 공람기간 : 2018. 10. 10. ~ 2018. 10. 26.(14일 이상)

사. 공람장소 : 논산시청 도시재생과 (☎041-746-621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및 관계도서 : 별첨1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	내동	371-31	도	13.0	13.0	논산시				
2	내동	376-3	도	489.0	9.3	임중현				
3	내동	376-5	도	93.0	41.8	논산시				
4	내동	376-6	도	40.0	40.0	국(국토교통부)				
5	내동	376-10	대	181.0	71.0	논산시				
6	내동	376-11	대	231.0	57.5	논산시				
7	내동	379-17	장	56.0	56.0	논산시				
총 계				1,103.00	288.6					

공고제2018-1471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논 산 시 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점용의 목적	지중관로 매설	점용기간	2018.10.허가일 ~ 2027.12.31.
점용의 장소	논산시 부창동 263-6번지 외 9필지	점용면적	75㎡(일시점용 151㎡)
점용물의 종류	지중관로 매설	공사기간	18.10.허가일 ~ 18.12.31.까지
공사 방법	장비 및 인력	굴착 시 교통대책	-
도로의 복구방법	아스콘 포장 복구	도로굴착	여
점용자의 주소·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그 밖의 사항	

논산시공고제2018 - 1474호

논산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논산시「시군역량강화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논 산 시 장 

1. 목 적

○ 논산시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마을사업 관련 주민교육과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으로 농촌마을 가꾸기 확산

○ 마을사업 관련 주민 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주민주도형으로 민간주체들이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2. 사업 현황

○ 위 치 : 논산시 2개읍, 11개면

○ 대 상 : 희망마을, 색깔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체험마을 등

○ 사업기간 : 2018년(10~12월)

○ 사업금액 : 170백만원(국비 119 도비 15.3 시비 35.7)

○ 사업내용 : 희망마을, 색깔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체험마을 등 역량강화

○ 시 행 자 : 논산시장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8. 10. 2. ~ 2018. 10. 12.(10일간)

○ 열람서류 : 논산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서

○ 장 소 : 시 홈페이지, 논산시청 희망마을건설과 (☎041)746-6493

4. 주요사업 내용

○ 사업준비지구 : 마을만들기 기초역량교육, 주민 동기화 역량강화 등

⇒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논산 마을아카데미

○ 사업완료지구 : 사업완료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 시설물 운영 활성화, 리더 및 사무장 교육

○ 기타 역량강화 :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쉽고 즐거운 마을공동체 지원, 마을축제 등

5. 교육대상

○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읍·면 지역의 농촌마을

○ 주민주도의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 2019년 신규마을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과 완료된 마을의 사업지구

6. 기타

○ 우리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가꾸기에 대한 단계별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주도형 마을의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

7. 시행계획 승인내역

사 업 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운영기간	비고
합 계		200,000		
1 사업준비지구		200,000	2018. 10. ~ 2018. 12.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기초역량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 동기부여사업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강화			
논산 마을아카데미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순회홍보 (신규마을 발굴 및 확산)			
2 사업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활성화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리더 및 사무장 교육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관리를 위한 리더 및 사무장의 역량교육			
3 기타 역량강화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쉽고 즐거운 마을공동체 지원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체 활동 사업 추진			
주민주도형 마을단위축제 홍보	마을단위 축제를 주민들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 교육 홍보 지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역량단계별 절차를 거쳐 마을만들기 추진이 우수한 마을을 컨설팅 지원하여 홍보용 마을로 발굴 지원			
농촌마을발전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의 역량강화와 마을만들기 정보 공유			

논산시공고제2018-1492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논산시 공인 조례」 제9조에 의거 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및 폐기사유
   - 채운면 민원사무 인증기 교체
2. 신조 및 폐기일자 : 2018. 10. 10.
3. 재등록 및 폐기공인 내역 붙임 참조

2018. 10. 10.

논 산 시 장 

신조 및 폐기 공인

공 인 신 조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채운면 민원사무전용 인증기 (공인)		채운면 민원사무전용 인증기 (공인)	

논산시공고제2018-1489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대법원 판례[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므로

○ 행정안전부로부터[재정정책과-474(2018.2.6.)]동 조례의 개정 권고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행정동우회의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 평가 : -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

(3) 규제심사 :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10. . ~ 2018. 10. .

(나) 예고결과 :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자치행정과(041-635-3596)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지원 사항)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행정동우회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박　찬　해
	행 정 팀 장	유　재　락 (746-521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동우회 지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3. 논산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사업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목적달성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동우회의 활동에 대하여 차량 및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3조(지원심의위원회)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사항)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행정동우회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동우회의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삭 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 회장, 행정동우회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개정 2011. 12.09)(개정 2017.12.29.) 2. 위촉직 위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 전문가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절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삭 제>	

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회의) ①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제척) 제4조제1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시 지원대상자가 되는 행정동우회원은 위원회에서 제척한다.	<삭 제>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6.22.)	<삭 제>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삭 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30일 이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삭 제>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해당없음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박 찬 해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참고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133]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그대로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그대로 공포한 사안에서,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공무원, 서울시 의정회는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조례안이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2]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논산시공공시설사업소공고제2018-7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08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제19조~제24조 내용에 행정재산인 건물부분의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용어인 “일반재산”,“대부”,“임대”,“임대료”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08. ~ 2018. 10. 29.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 공공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논산시 체육로110(공설운동장)

☎ 041-746-8413, FAX 041-746-841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공공시설물임대 사용 허가”를 “건물의 사용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의 일부를 임대 및”를 “건물의 일부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임대료 감면)”을 “(건물 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료”를 “건물 사용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임대료 및 산출방법”을 “건물 사용료 및 산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4항 중 “임대료”를 “건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중 “임대”를 “사용”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임대 우선순위”을 “건물 사용허가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임대 ”를 “건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임대허가의 취소”을 “건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임대계약”을 “건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임대허가의 기간)”을 “(건물 사용허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임대계약”를 각각 “건물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원
	공설운동장팀장	남 기 훈
	담 당 자	박 창 열 (041-746-841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공시설물임대사용허가) ①시장은 운동장 시설의 일부를 임대 및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제19조(건물의 사용 허가)** ① ---------- 건물의 일부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건물 사용료 감면)** ① ----------건물 사용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임대료 및 산출방법)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21조(건물 사용료 및 산출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 ----------건물 사용료-------.
② 제1항의 임대료는 그 전액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	② ----건물 사용료---------- ----------건물 사용료----- ---------- ---------- ----------

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임대료는 건물분과 부지분을 합한금액으로 정한다	④ 건물 사용료----------.
1. 건물분은 건물평가액 × 면적 × 임대요율	1. ----------사용---
2. 부지분은 개별공시지가 ×면적× 임대요율 × 층수요율	2. ----------사용----------
⑤ 임대요율은 50/1000으로 한다.	⑤ 사용----------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임대 우선순위)	**제22조(건물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사용 목적일 경우 국가를 우선으로 한다.	---------- --- 건물 사용허가 ---------- ---------- ---------- ----------.
1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3조(임대허가의 취소)	**제23조(건물 사용허가의 취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대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건물 사용허가 _----------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임대허가의 기간)	**제24조(건물 사용허가의 기간)**

임대계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임대계약 기간을 연장 하게 할수 있다	건물 사용허가 ---------- ---- ---------- ---------- ---------- ----------건물 사용허가 ----------.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원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